

05 FTA와 품목분류

금속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경계에서 본 품목분류와
Section 232 관세 적용

TRADE & ORIGIN REPORT



금속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경계에서 본 품목분류와 Section 232 관세 적용



김학현
신한관세법인 가치성장본부
관세사



I. 서론

최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추가관세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6년을 기점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 적용 방식과 관세조치 간 적용 구조가 동시에 재편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복수의 관세조치가 동일 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세의 중복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조치 간 적용 순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한 모든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관세조치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관세 적용 기준이 단순한 HS 코드에 따른 분류를 넘어, 추가적인 판단 요소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조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이 특정 용도에 따른 관세조치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과 같이 재질에 따른 관세조치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분류 결과와 함께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관세 적용 기준이 HS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용도 또는 사용 목적이 추가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금속제품과 자동차 부분품 간 품목분류를 중심으로 동일한 금속 제품이 서로 다른 분류로 판단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Section 232 관세 적용과의 상관관계 및 추가적인 검토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품목분류의 기본 원칙과 분류 기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은 단일한 HS 코드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품목분류 과정에서는 하나의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관세율표가 물품의 재질, 기능 및 용도 등 다양한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속제품과 자동차 부품과 같이 서로 다른 분류체계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속제품과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분류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밸브 스프링을 들 수 있다. 해당 물품은 내연기관의 밸브를 개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자동차 엔진에 전용되는 제품이지만, 동시에 철강으로 제조된 스프링이라는 점에서 HS 제7320호(철강제 스프링)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부품이라는 점만을 고려할 경우 HS 제8708호(자동차 부분품)로의 분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 분류에서는 이러한 외형적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세율표 통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관련 부 및 류 주 규정(Section and Chapter Notes), 그리고 해설서(Explanatory Notes)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특히 철강제 스프링은 관세율표상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 부분품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자동차 엔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HS 제7320호로 분류되는 것이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동일 물품이 기능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와 분류 체계에 따라 금속제품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품목분류가 단순한 용도 판단이 아니라 법적 해석에 기반한 판단임을 보여준다. 즉, 품목분류는 외형적 사용 목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상 정의된 개념과 적용 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 철강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참조번호	N348645
결정세번	7320.20.5020
품명	Engine valve springs (엔진 밸브 스프링)
물품설명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밸브 개폐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선형 코일 스프링으로, 고온·고압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합금강 소재의 정밀 부품
결정내용	스프링은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에 해당하며, 이는 특정 기계나 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부품을 의미한다. 관세율표 제17부 주2 규정은 이러한 범용성 부분품을 자동차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제17부로 분류되지 않는다.

본 사례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만으로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스프링과 같이 관세율표상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으로 정의된 물품은 특정 산업에 종속되지 않는 표준 부품으로 간주되어, 자동차 부품 체계에서 제외되고 금속제품으로 별도 분류된다.

이는 품목분류에 있어 “사용 목적”보다 “관세율표상 정의된 법적 개념”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동일한 자동차 관련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HS 코드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품목분류는 단순히 물품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상 규정과 정의에 따라 결정되는 법적 해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금속재질의 자동차 관련 부품이 이와 같이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하게 금속으로 구성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과 구성에 따라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부분품 분류 사례를 살펴본다.

참조번호	N352712
결정세번	8708.80.6590 / 8708.94.7550
품명	Ball joints / Pitman arms (볼 조인트 / 피트먼 암)
물품설명	차량의 서스펜션 및 조향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바퀴의 움직임을 제어하고 조향 기능을 수행
결정내용	철강을 포함한 금속 소재로 구성된 기계적 부품 해당 물품은 각각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 및 조향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HS 제8708호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세부 호(서스펜션 부품 및 조향 부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해당 호의 문언에 근거하여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었다.

앞서 살펴본 스프링 사례와 달리, 볼 조인트 및 피트먼 암은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금속으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품목분류에 있어 적용된 법적 기준은 서로 다르다.

스프링 사례에서는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b)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에 해당함에 따라,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b)에 의해 자동차 부분품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즉, 이 경우에는 특정 규정에 따른 배제 논리가 우선 적용되어 금속제품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

반면, 볼 조인트 및 피트먼 암 사례에서는 해당 물품이 차량의 서스펜션 및 조향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적 부품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HS 제8708호 내에서 각각 서스펜션 부품 및 조향 부품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세부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분류가 적용되어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동일하게 금속으로 구성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분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사례에서는 특정 주 규정에 의해 자동차 부분품에서 제외되고, 다른 사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호의 용어에 의해 자동차 부분품으로 포함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분류 논리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스프링 사례 (HS 7320)	볼조인트/ 피트먼 암 사례 (HS 8708)
대상 물품	철강제 나선형 스프링	서스펜션·조향 시스템 부품
적용 규정	- 제15부 주 제2호 - 제17부 주 제2호 적용 “범용성 부분품” 해당 → 제17부 제외	“범용성 부분품” 해당하지 않음 → 제17부 적용 가능 - HS 제8708호 문언 - 대상물품의 기능에 따라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
최종 분류	제7320호 (철강제 스프링)	제8708호 (자동차 부분품)

이와 같이 금속제품으로 분류되는 물품과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및 제17부 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parts of general use)” 개념이나, 특정 차량 시스템에 전용되는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 기준 등 비교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품목분류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Section 232 관세가 철강·알루미늄·구리뿐 아니라 그 파생제품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단순히 제72류, 제73류, 제74류 및 제76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기계류,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한 HS 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와 금속 파생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 등 복수의 관세조치 적용 대상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품목분류를 넘어 실제 적용되는 관세조치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III. Section 232 관세 적용 구조

미국의 Section 232 관세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체계를 통해 적용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Section 232 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는 완성차와 부분품으로 구분되며, 완성차는 차량 유형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고, 부분품은 해당 부품이 어떤 차량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자동차 부품은 HS 코드상 자동차 전용부품 뿐만 아니라, 별개의 HS 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 구분	적용 대상	주요 HS CODE	적용 관세율
완성차	승용차·경트럭	승용차, SUV, 밴 등	8703, 8704	15%
	중·대형 차량	트럭, 특수차량 등	8701, 8704, 8705, 8706, 8709	25%
	버스	여객운송 차량	8702	10%
부분품	자동차 전용 HS CODE 부품	차체,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	8708 등	(승용차용) 15%
				(중·대형차용) 25%
	자동차 비전용 HS CODE 부품	스프링, 고무제품, 금속부속품 등	7320, 4016, 8301, 8302	(승용차용) 15%
				(중·대형차용) 25%

2.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Section 232 관세의 분류기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는 단순히 금속의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Annex에 규정된 품목 범위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관세율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동일 금속이 포함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각 제품이 포함된 Annex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 대상 (정리)	관세율	주요 HS CODE (예시)
Annex I-A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재료 및 1차 가공품, 일부 기초 파생제품	50% (Full Value)	7208(열연강판), 7219(스테인리스 판재), 7604~7606(알루미늄 판·봉)
Annex I-B	금속이 포함된 완제품 및 산업용·소비재 파생제품	25% (Full Value)	7321(가정용 기구), 8302(금속 부속품), 8418(냉장고)
Annex II	화장품, 식품, 생활화학제품, 소비자재, 일부 엔진 및 부품 등 금속 함량이 미미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외된 품목	철강/알루미늄/구리 Section 232 관세 미적용	3304(화장품), 1905(식품), 3402(세정제)
Annex III	초고압 변압기 및 부품, 산업 기계·생산설비·부품 등 제조·에너지 인프라 핵심 설비	한시적 15% (MFN 포함)	8504(변압기), 8455(압연기), 8479(산업용 기계), 8480(금형)

위 Annex 체계는 2026년 4월 2일과 6월 1일 포고문을 통해 두 차례 개편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세 산정방식으로, 종전의 금속 함유가치(value of contents) 분리부과 방식이 파생제품을 포함한 물품의 전체 관세가액(full customs value)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철강·알루미늄·구리 3개 조치는 서로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도 함께 명문화되었다.

이어 6월 개편에서는 15% 세율 적용대상이 농기계·주거용 냉난방설비 등으로 확대되고 관세면제 품목에 대한 미국산 금속 함유기준이 95%에서 85%로 완화되었으며, EU·영국·일본·한국 등 주요 교역국은 총 관세부담이 15%로 상한 적용되는 등 세부 예외가 추가되었다.

3. 철강/알루미늄/구리제 자동차 부분품의 분류사례 연구

1) Section 232 부과대상 여부에 따른 관세적용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Section 232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는 각 근거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는 HS CODE를 나열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HS CODE가 각 관세조치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관세조치 적용여부 판단 시 가장 우선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항목	내용
참조번호	N351999
결정일자	2025-08-27
결정세번	8482.10.5028
품명	wheel bearing (휠 베어링)
물품설명	The products at issue are wheel bearings... The steel bearings, which are designed to support axial and radial loads, consist of an outer ring, inner rings, and a double row of balls incorporated into cages. The bearings are used in wheel hub assemblies installed in sedans, sports utility vehicles, crossover utility vehicles, minivans and light trucks. 검토 대상 물품은 휠 베어링입니다. 축방향 및 반경방향 하중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강철 베어링은 외부 링, 내부 링 및 케이지에 결합된 두 줄의 볼로 구성됩니다. 베어링은 세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로스 오버 유틸리티 차량, 미니밴 및 경트럭에 설치된 휠 허브 어셈블리에 사용됩니다.
결정내용	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wheel bearings will be 8482.10.5028,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which provides for Ball or roller bearings, and parts thereof: Ball bearings: Other: Angular contact bearings: Other. The general rate of duty will be 9 percent ad valorem. 휠 베어링은 HTSUS의 소호 8482.10.5028 "볼 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 베어링(roller bearing), 이들의 부분품: 볼 베어링(ball bearing): 기타: 앵귤러 콘택트 베어링(angular contact bearing): 기타"로 분류됩니다. 기본세율은 9% 입니다.
관세조치 적용	기본관세 9% / Section 232 철강 50%(9903.81.91, 철강 부분) / 상호관세 19% 적용 (9903.02.61 신고)

본 물품은 제87류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지만, Section 232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HS CODE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용도 상 자동차 부분품으로 사용되더라도 모든 물품이 자동차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치는 별도로 지정된 세번에 한하여 적용된다. 반면, Section 232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조치에서는 HS 8482.10.5028호에 대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사례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아닌, 철강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관세조치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른 Section 232 관세적용

위와 같이 수입물품의 HS CODE가 특정한 관세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세조치 적용은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대목차 II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부 물품들은 금속제 제품의 성격과 승용차 등의 부분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파생상품에 대한 HS CODE 목록과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HS CODE 목록을 살펴보면 7320호, 8708호 등 동일한 HS CODE가 두 관세조치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관세는 동일 물품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조치 간 우선순위 및 적용 기준에 따라 특정 관세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를 가진다.

현재 미국 관세조치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관세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과 금속 파생제품으로 한정하면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관세조치	적용 대상	적용 방식
1순위	Section 232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승용차, 경트럭 및 부품 중대형차량, 버스 및 부품	우선순위에 따른 적용
2순위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3순위	Section 301 (강제노동, forced labor) IEEPA 관세 (~ 2026년 2월 20일 종료) Section 122 (~ 2026년 7월 24일 종료)	60개 주요 교역상대국 (10~12.5%, USMCA 대상 제외)	
병행	일반관세 및 Section 301(대중국),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	각 조치에 따라 적용	병행 적용

이에 대한 미국의 실제 관세부과사례는 하기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품목분류회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항목	내용
참조번호	N349664
결정일자	July 2, 2025
결정세번	8708.80.6590
품명	Strut Mount (스트럿 마운트)
물품설명	The article under consideration is described as a Strut Mount ..., It consists of a plastic bearing, an aluminum alloy bracket and upper lid, a carbon steel inner plate, ..., The strut mount serves to secure the suspension to the chassis and absorbs shocks and vibrations transmitted from the road surface... 검토 대상 물품은 스트럿 마운트(Strut Mount)로 설명되며, 플라스틱 베어링, 알루미늄 합금 브래킷 및 상부 커버, 탄소강 내부 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스트럿 마운트는 서스펜션을 차체에 고정하고,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결정내용	(일부 발췌) 8708.80, HTSUS. the subheading not only provides for suspension systems and shock absorbers, but also for parts. As a result, subheading 8708.99 will not apply to the strut mount at issue. The applicable subheading for the Strut Mount... will be 8708.80.6590, HTSUS, which provides fo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ck absorbers): Parts: Other: Other: Other." HTSUS 제8708.80호는 서스펜션 시스템 및 쇼크 업소버뿐만 아니라 그 부분품(parts)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건 스트럿 마운트에는 제8708.9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스트럿 마운트(부품번호 SZ437-B72-01)에 적용되는 세번은 HTSUS 제8708.80.6590호로서, 이는 "8701호부터 8705호까지의 자동차의 부분품 및 부속품: 서스펜션 시스템 및 그 부분품(쇼크 업소버 포함): 부분품: 기타: 기타: 기타"를 규정한다.
관세조치 적용	기본관세 2.5% / Section 232 자동차 부분품 25%(제9903.94.05) / 상호관세 미적용 (9903.01.33)

본 사례의 물품의 경우, 8708.80.6590호의 물품으로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CODE이다. 해당 물품은 포고문에 따라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Section 232가 부과되는 물품임에 동시에 포고문에 따라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따른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다.

이때 본 사례의 CBP 회신을 보면 Section 232 자동차 부분품으로서의 관세조치를 적용하되 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서의 관세조치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025년 5월 15일, CSMS #65054270에 따른 관세조치 우선순위의 적용결과로 볼 수 있다.

3) 수입물품의 용도에 따른 Section 232 적용제외

1), 2) 사례를 통해 관세조치 규정 상에 HS CODE의 기재여부에 따른 관세 부과 및 복수의 관세조치에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조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Section 232에 대해 HS CODE 품목분류 상 관세조치 대상임에도 물품의 용도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백악관 포고문 Proclamation 10908의 Annex I (h) (ii) (h) Heading 9903.94.06 applies to all entries of articles classifiable under provisions of the HTSUS enumerated in subdivision (g) of this note. “that are not parts of passenger vehicles (sedans, sport utility vehicles, crossover utility vehicles, minivans, and cargo vans) and light trucks.”

Proclamation 10945의 (l) “Heading 9903.74.11 applies to all entries of articles classifiable under provisions of the HTSUS enumerated in subdivision (i) of this note that are not parts of medium- and heavy-duty vehicles.”를 보면 각각 HS CODE는 기재되어 있으나 승용차 등과 트럭의 부분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항목	내용
참조번호	N352685
결정일자	2025-09-10
결정세번	8507.60-0020
품명	Battery pack (배터리 팩)
물품설명	The merchandise under consideration is identified as a lithium-ion battery pack... Its main components include nine cylindrical battery cells, a printed circuit board assembly, and a cable with a connector. Post-importation, the battery pack will be used in a gas detector... 검토 대상 물품은 리튬 이온 배터리 팩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에는 9개의 원통형 배터리 셀, 인쇄 회로 기판 어셈블리 및 커넥터가 있는 케이블이 포함됩니다. 수입 후 배터리 팩은 가스 검출기에 사용됩니다.
결정내용	The subject merchandise is a rechargeable battery pack, which is a device provided for in heading 8507, HTSUS.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을 위한 적용가능한 미국 통일관세율표(HTSUS)상 소호는 제 8507.60.0020호입니다. 기본세율은 종가 3.4% 입니다.
관세조치 적용	기본관세 3.4% / Section 301 중국산 물품 7.5%(제9903.88.15) / 상호관세 10% 적용 (9903.01.25) / IEEPA 추가관세 20% (9903.01.24)

상기 물품은 품목분류상 제8507.60호에 해당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로서, Section 232 자동차 부분품 관세 대상에 열거된 HS 코드에 포함되는 물품이다. 그러나 CBP 화신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은 수입 후 가스 검출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물품은 비록 대상 세번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 부분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 적용이 배제되었다.

이는 앞선 사례와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휠 베어링의 경우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Section 232 자동차 관세 대상 세번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 적용이 되지 않았던 반면, 본 사례는 대상 세번에 해당함에도 실제 용도가 자동차 부품품이 아니므로 관세 적용이 배제된 것이다.

IV. 결론

품목분류는 모든 관세 판단의 출발점이며, 동일 물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와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금속제품과 자동차 부품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법적 정의에 따라 전혀 다른 HS 코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Section 232 관세 적용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Section 232 관세조치의 적용은 해당 물품이 포고문에 열거된 대상 세번에 포함되는지 여부 뿐 아니라 수입물품의 기능과 용도, 그리고 복수의 관세조치 간 비중복 적용 구조 등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나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에는 금속함량 기준에 따라 Section 232 관세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구조도 존재하고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HS 코드에 해당하더라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최종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Section 232 관세는 품목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그 이후 단계에서의 추가적인 판단 요소에 의해 최종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검토는 금속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경계에 있는 물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보와 더불어 적용 가능한 관세조치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수적이다.

※ 본 원고는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발표된 법령 개정, 고시·공고, 행정해석 변경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